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6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안철수 · 이종욱 · 김 건
김상훈 · 이현승 · 최은석
김태규 · 성일종 · 김용태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8).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u>2026년 12월 31일</u>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액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	①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 ----- ----- ----- -----

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